

대진의 진료 시 청구방법

청구방법 2024-03-04 1,912

[질문]

주치의 해외 출국으로 대진의 진료(처방) 시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.

[답변]

- 주치의가 휴가 도는 해외 출장 등으로 대진의가 진료 및 처방을 한 경우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료기록, 처방전 등을 작성,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요양기관 현황에 대하여 변경 신고하고,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면허종류,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< 통합신고포털 시스템(www.hurb.or.kr) 신고방법

>

- (휴가자 신고) / 현황신고변경 / 인력선택 / 의(약/조산)사 신고
- (대진의 등록) 신규입사 / 근무형태: 대진의 선택 / 대체기간
입력

[관련 근거]

- 「의료법」 제17조의2 제1항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2조 제1항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 및 제43조
-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」 제28조

[스크랩](#)

[목록](#)